



사생활 보호

▲ 2013-1137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문〉

국제신문 2013년 5월 11일자 7면 「보육원 아이들 친형된 공무원」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세현 씨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희락원 원생들과 양산 통도환타지아를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붉은 티셔츠를 입은 원생 뒤에서 V자를 그리는 이가 최 씨다. 희락원 제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부산시의 20대 공무원 최세현씨가 2009년부터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희락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담기사다.

그런데 국제신문은 위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최씨가 어린이날을 맞아 양산 통도 환타지아에서 원생들과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로 실었다. 위 사진은 원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희락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때문에 국제신문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보육원 생활을 하고 있는 원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사진게재로 인한 원생들의 신분노출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규정의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인의 사생활 보도

▲ 2013-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3년 4월 1일자 21면 「연예계 주택 최고가 랭킹 톱10」 관련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일간스포츠는 「연예계 주택 최고가 랭킹 톱10」이라는 문패를 달아 1개면 전체를 할애해 배용준, 조영남 등 연예계 고가 주택 소유자 11명(김승우와 김남주는 부부)의 주거지를 주택 가격 순서에 따라 표와 사진을 곁들여 일일이 소개했다.

일간스포츠는 해당 연예인별로 주택 시세를 제목으로 앞세우고 주택의 특징과 주변환경, 구입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주택의 위치와 크기, 매입 시기와 가격을 표로 정리해 소개했다.

이들 모두가 대중들의 관심이 큰 연예계 스타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사생활 노출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주택의 위치까지 시시콜콜 밝힌 것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4년 1월 17일자 A13면 「연예인 에이미는/케이블방송 ‘악녀 일기’로 얼굴 알려 … 美서 대학 나온 부잣집 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는 미국 출생으로, 미국 네바다대 라스베이거스 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08년 케이블 채널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상류층 사회의 사치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했다.

2010년에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자기가 사는 서울 한남동의 호화 빌라를 공개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2008년 연인이었던 댄스 그룹 신화의 이민우(34)와 결별하며 “이민우가 연애 당시 자주 속이고 변명을 늘어놓아 헤어졌다”고 말했다가 같은 그룹 멤버 김동완(35)이 “헤어진 연인과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비

정상적이고 지지분한 행동”이라고 받아치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10년엔 자기 이름을 내건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 분배 문제로 동업자인 가수 출신 오병진(38)씨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도 있다. 에이미는 오씨를 ‘사이코’ ‘쓰레기’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오씨는 에이미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1년엔 ‘성형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앞트임(눈 수술)만 했다”고 말을 바꿨다. 에이미는 201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0188.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 검사 사건을 다룬 같은 면의 기사 「에이미의 성형醫, 직원 성폭행 피소 … 그 바람에 ‘檢事추문’도 들통」의 관련 기사로, 방송인 에이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에이미가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연인이었던 댄스 그룹 신화의 이민우와 결별 당시 했던 발언 때문에 다른 연예인과 설전을 벌였고, 2010년 온라인 쇼핑몰 수익 분배 문제로 가수 출신 오병진씨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상대방을 비난했고, 성형 논란이 불거졌던 일까지 시시콜콜 전하고 있다. 기사 제목에도 ‘美서 대학 나온 부잣집 딸’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기사에 소개된 에이미의 신상 정보나 과거 발언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것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에이미의 부정적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사례들이다. 또한 에이미의 이 같은 과거 행적이 전모 검사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사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에이미가 비록 대중에게 잘 알려진 방송인이라 할지라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 신상을 이처럼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4년 3월 6일자 A10면 「배우 장동건 부부 가평 별장에 도둑」·「장씨가 도난당한 카메라 3대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배우 장동건...〉= 『유명 배우 장동건(42)·고소영(42)씨 부부의 가평 별장에 도둑이 들어 카메라 3대를 훔쳐 달아났다. 장씨 부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별장에는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도난 당시에는 빈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장씨 부부의 별장이 도난당했다는 무인경비업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비업체는 “밤 8시 53분쯤 무단 침입 경보가 울렸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건물 뒤쪽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1층 거실 진열장에 보관돼 있던 카메라 3대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을 받고 밤 10시쯤 매니저와 함께 도착한 장씨는 현장을 확인한 뒤 “니콘 F2·F3 필름 카메라와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졌다.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이외에 귀중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거실 진열장에 있던 카메라만 훔쳐 급히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물 바깥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지만 산과 연결된 뒤편 담장 밖은 경사가 있고 낮아 도둑이 쉽게 넘어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별장은 CCTV 8대가 설치돼 있지만, 건물에서 멀거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침입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씨 부부의 별장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조성해 분양한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 60여개 필지 가운데 23개 필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장씨의 별장은 단지의 가장 안쪽 꼭대기에 있으며 부지는 약 400평이다. 별장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서울 고소영 빌딩’ ‘강원도 정선 원빈 집’ 등으로 불리는 유명 연예인의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곽희수씨가 설계했으며, 한 달 전쯤 완공됐다. 부지는 부인 고씨가 결혼 이전인 2009년 약 4억원에 매입했으며, 건축비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강과 청평호수를 끼고 있는 설악면 일대는 자연환경이 좋고 서울과 가까워 부유층 인사들의 별장이나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6/2014030600123.html)

〈장씨가 도난당한...〉= 『1971년부터 생산된 니콘 F2는 니콘을 좋아하는 프로 사진가들 사이에선 가장 잘 만들어진 기계식 명품 카메라로 통한다. 튼튼한 내구성 때문에 1970년대 중군기자들이 가장 애용했던 카메라다.

F2 시리즈에 이어서 1980년부터 생산된 F3 카메라는 2001년까지 생산된, 니콘 카메라 중 가장 장수한 기종이었다.

조리개 우선 자동노출 기능이 처음 장착되었고, 카메라 보다 위의 헤드(펜타프리즘)가 분리되어 파인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볍고 튼튼한 카메라로 니콘 F3를 채택, 1981년 컬럼비아 우주왕복선에 처음 사용하게 된다. 이후 최근까지도 니콘 카메라가 우주 유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종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니콘 F2와 F3는 이미 단종된 기종이라 현재 중고 카메라 시장에서 각각 30만원,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뛰어난 해상도를 자랑하는 칼차이스(carl zeiss) 렌즈를 사용하는 라이카(Leica) 카메라는 많은 카메라 애호가 사이에서 SLR 카메라의 로망으로 통한다. 최초의 소형 카메라로, 세계 최고의 보도사진가 그룹인 매그넘(Magnum) 작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작가가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1998년부터 라이카도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200만원대부터 900만원대까지 다양한 모델이 팔리고 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6/2014030600111.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명 배우인 장동건·고소영 부부의 경기도 가평 별장에 도둑이 들어 카메라 3대를 도난당했다는 사건 기사다. 기사는 무인경비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피해자 장씨가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다는 말까지 세세하게 전하고 있다.

장씨 부부가 별장에서 도난당한 것은 카메라 3대가 전부다. 피해 금액은 일부 언론에서 시가 100만원 정도라고 보도할 정도로 소액이다. “집 안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이외에 귀중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거실 진열장에 있던 카메라만 훔쳐 급히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으로 볼 때 사건 자체도 단순하다.

그런데 朝鮮日報는 대형 사건이라도 벌어진 양 기사에 장씨 부부 별장 사진과 별장이 위치한 약도를 덧붙여 눈에 띄게 편집했다. 게다가 「장씨가 도난당한 카메라 3대는/니콘 F2·F3, 기계식 카메라의 名品/라이카는 高價 카메라의 대명사」 제목의 별도 기사까지 카메라 사진 3장을 곁들여 게재했다. 기사는 또 장씨 부부 별장의 규모와 부지 매입 및 건축 시기와 비용 조달 과정, 별장을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 별장의 위치 등 도난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부분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전했다.

이러한 기사는 장씨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유명인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흥미 위주로 작성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처럼 흥미 위주로 기사를 다루는 것은 사회의 공기로써의 신문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